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‘2024년 5월 31일’에서 ‘2027년 5월 31일’로 연장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없 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훈령 제1749호

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안

항공통신시설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이 훈령”으로, “규정을”을 “훈령을”로, “2024년 5월 31일”을 “2027년 5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유효기간) <u>국토교통부장관</u>은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이 <u>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9조(유효기간) <u>이 훈령</u>----- ----- ----- <u>훈령을</u>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5월 31일</u>----- -----.</p>